# 계약세칙

제 정 2006. 1. 11. 개 정(1) 2012. 4. 30. 개 정(2) 2012. 9. 21. 개 정(3) 2014. 7. 14. 개 정(4) 2016. 1. 20. 개 정(5) 2016. 11. 24.

개

개

정(6) 2018. 9. 27.

정(7) 2023. 2. 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물품·용역·공사계약(이하 "계약")업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장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공사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계약사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요기관"은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요기관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 제2조의2(계약주관부서장 및 계약담당자) ① "계약주관부서장" 이라 함은 제1조에서 규정한 계약업무를 총괄운영 및 지도·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공사「업무분장세칙」에서 정한 계약관리업무(국가계약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 ② "계약담당자"라 함은 입찰을 추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부서의 장(동일한 권한을 갖는 직무대행자 포함) 및 담당직원을 말한다.
  - ③계약주관부서장은 소속부서의 직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계약 관계법령 및 제규정 해석
  - 2. 계약관련 내규의 제·개정
  - 3. 입찰 및 수의계약 자문 및 검토
  - 4. 입찰절차 및 계약이행관련 업무지원
  - 5. 계약관련 정부 정책 이행 및 대·내외 자료 제출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 관련 계약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3조 (기타공공기관의 지정·해제 등) 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따른다.
- 제4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세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계약의 방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 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본점'이라 한다) 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만
- 3.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 금액 미만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⑥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접수 등을 공사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의2(국제상관례의 적용 등) ①계약담당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조달 절차 및 제반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세칙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 1. 투자 및 자산운용 등 공사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 법률 또는 금융정보 제공 서비스를 선택적·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
  - 2. 해외지사(사무소)가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그 밖에 계약상대자 소재국의 일반적인 상거래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행을 약정하기 위해 공정계약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

- 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 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1.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자회사(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 나. 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 주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라. 경영혁신을 위하여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로서 주무기관 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4.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 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8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세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입찰보증금)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 금을 혀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통상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하며, 입찰의 성격, 입찰참가자의 이력, 입찰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찰보증금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④제3항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3.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②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계약주관부서는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 (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2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대가의 수납) ①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약상대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
  -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 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 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사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전항 제4호의 증서를 제출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 ③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⑥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④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 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⑤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⑥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⑦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

-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계약담당자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⑨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계약담당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하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세부사항) 입찰 및 계약체결·이행 등과 관련한 제반업무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계약지침에서 정한다.

###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세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세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세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세칙에 의한다.

####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